

# 한국체육대학교 겸임교원 등에 관한 규정

제정 2019. 7. 22. 규정 제793호

## 1. 제정 이유

- 「고등교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(강사 및 겸임교원 등 관련)이 2019.8.1.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 사항 반영
- 현행 겸임교원·초빙교원 등에 관한 규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통합하여 새로운 규정으로 제정

## 2. 주요 내용

- 겸임교원, 초빙교원의 자격 기준을 명시 (안 제 3조)
-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, 학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음을 명시 (안 제5조)
- 겸임교원, 초빙교원의 임무 명시 (안 제 6조)
-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주당 강의시간은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, 학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12시간까지 가능( 안 제7조)
- 근무기간, 임금, 면직사유,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그 밖에 근무 조건은 임용계약 사항으로 명시(안 제8조)
- 겸임교원 등은 재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학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임용(안 제12조)
- 임용일, 임용심사위원회, 채용원칙 및 절차, 소속, 근무조건 및 복무 (재임용 제외), 신분보장, 휴직, 인사관리 등은 강사 임용 규정을 준용 (안 제13조)

## 3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## 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고등교육법」 제15조 및 제17조,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조, 「교육공무원법」 제31조 및 제47조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및 제69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불 입 : 제정 전문